

派生金融商品去來의 課稅에 관한 研究

Taxation Considerations of Derivative Instruments

姜 哲 勝*

논문 개요

파생상품거래의 과세는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파생상품거래에 대하여 선도거래, 선물거래, 옵션거래, 스왑 거래의 4가지 형태로 유형화하여 과세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파생상품 거래 손익에 대해서는 만기일, 반대매매일, 청산 일에 과세소득을 인식하는 결제기준을 적용하되,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인프라구축이 미흡한 현실을 고려하여 결산일 현재의 공정가액 평가와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에 대한 과세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 옵션, 외환 거래 등으로 한정하고, 스왑거래, 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거래 상대방이 파생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위험회피 회계를 수용하는 경우라면 위험회피대상인 자산·부채의 공정가액평가를 허용해야 하며,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의 공정가액 변화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이 과세대상으로 귀속되는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과세소득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파생상품거래의 과세제도 합리화를 위하여 옵션거래에 있어 행사 일에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와 행사하지 않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행사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파생상품 거래와 결합하여 평가 증 된 포지션으로부터의 이익을 아무런 과세부담 없이 향유하거나 조세부담을 이연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평가증된 포지션에 대해 공정가액으로 양도, 처분,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익을 인식하도록 하는 간주매출규정의 적용을 제안한다.

주제어: 파생상품거래, 선도거래, 선물거래, 옵션거래, 스왑거래.

* 中央大 國際經營大學院, e-mail: cskang@cau.ac.kr, cp : 011-9087-8004.

I. 서론

파생상품은 끊임없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새롭게 개발되는 파생상품을 포괄하기 위하여 요건주의를 채택하여 일정요건만 충족되면 파생상품회계처리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금융상품과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 역시 현재에도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적용 가능한 법 규정을 단시일 내에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가장 기본골격이 되고 있는 선도거래, 선물거래, 옵션거래, 스왑거래의 네 가지 형태의 파생상품거래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파생상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재무회계기준서 133호(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133)가 1998. 6에 제정된 이후 보완과정을 거쳐 2000. 6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태에 있지만, 과세규정은 1981년 이전의 IRC(Internal Revenue Code), 1981년 이후의 ERTA (Economy Recovery Tax Act), 1986년 레이건 행정부의 조세개혁, 1997년 Taxpayer Relief Act of 1997 등 일련의 입법과정을 거쳐 제도화되었다. 여기에는 파생상품 전체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규정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파생상품의 종류와 세목별로 과세방안과 규칙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는 새로운 파생상품이 계속 개발됨에 따라 이를 회계 처리하여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공시하기 위한 회계처리기준의 제정보다도 우선하여 파생상품의 과세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음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과세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통달은 1998. 10. 30에 마련되었으나, 파생상품의 회계처리기준은 1999. 1. 22에 공포되어 오히려 세법규정이 먼저 제도화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은 이미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파생상품 관련세제도 세원관리와 공평과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파생상품 거래는 거래시점과 손익의 실현시점이 서로 달라 기존 조세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조세이연, 조세회피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과세소득을 포착하는 과정에서 권리의무 확정주의, 실질과세원칙, 자의 계산 배제원칙, 부담능력원칙, 기업회계 존중원칙 간에 일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방안은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성격 및 과세대상 소득의 귀속 시기와 파생상품거래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혹은 국외에서 발생한 것인지 즉 국내외 원천소득 구분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기본적인 과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과세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련 과세규정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현행 과세제도가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의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과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성격과 그 귀속 시기에 대해 주요 파생상품 거래별로 나누어 분석한 다음 과세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파생상품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파생상품의 평가방법과 평가손익의 인식문제, 거래 손익의 인식문제와 과세소득의 산출,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는 경우의 과세처리에 대해 현행 세법의 체제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아울러 파생상품 거래가 활성화된 미국과 일본의 입법 예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현행법상 국세청이

나 (구)재무부의 예규나 해석 이외에는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규정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파생상품 관련 세제를 정비할 경우 유용한 시사점을 얻기 위함이다.

한편 옵션거래에 있어 행사 일에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와 행사하지 않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행사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 또는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결산일 또는 평가시점의 파생상품 평가손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파생상품 거래와 결합하여 평가 증 된 포지션으로부터의 이익을 아무런 과세부담 없이 향유하거나 조세부담을 이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 증 된 포지션에 대해 간주 매출 일에 공정가액으로 양도, 처분,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익을 인식하도록 하는 파생상품의 간주매출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한다.

II. 파생상품거래 현황

1. KOSPI 200 주가지수 선물·옵션 시장 현황¹⁾

우리나라에서 주가지수선물은 1996년 5월 3일에 주가지수옵션은 1997년 7월 7일에 도입되었다. 그 이후 거래가 계속 활성화되어 2003년 거래량 기준으로 선물은 세계 4위, 옵션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옵션은 1999년부터 거래량 1위를 지속하고 있고 선물거래량은 1998년부터 2위에서 4위 사이를 기록하고 있다. 2003년 KOSPI 200주가지수옵션의 연간 거래량은 28억 300만 계약에 달했는데 이러한 거래규모는 사상 유례가 없는 거래량으로, 이와 같은 급성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급증하여 파생상품시장을 이용한 위험관리 수요도 같이 비례적으로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급등하는 경우 헤지 요인이 증가하면서 파생상품수요도 증가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주식시장변동성이 2배 이상 급등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동성은 최근 들어 감소추세로 돌아서면서 파생상품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제동을 걸고 있다.

둘째 투기수요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투기수요와 헤지 수요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은 존재로서 양쪽이 동시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내투자자의 단기 승부적 기질과 조급성으로 인해 투기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선물 및 옵션시장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셋째 어떤 시장의 유동성이 좋아지면서 거래가 간편해지고 활발해지면 이 시장의 이용자들의 편리성이 증가하면서 거래가 집중되는 눈덩이 효과(snow call effect)가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선물 및 옵션시장에도 이와 같은 눈덩이 효과가 나타나면서 일부 주식투자자까지 파생상품거래에 참여하는 등 과열양상을 보일 정도로 거래가 활발해 졌다.

넷째 세계 제1위의 인터넷이용률에 기반을 둔 홈 트레이딩이 보편화되고 제도도 개선되면서 거래가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시장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투자자의 시장

1) 윤창현. 2004. “파생상품 과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선물학회심포지엄 자료 pp.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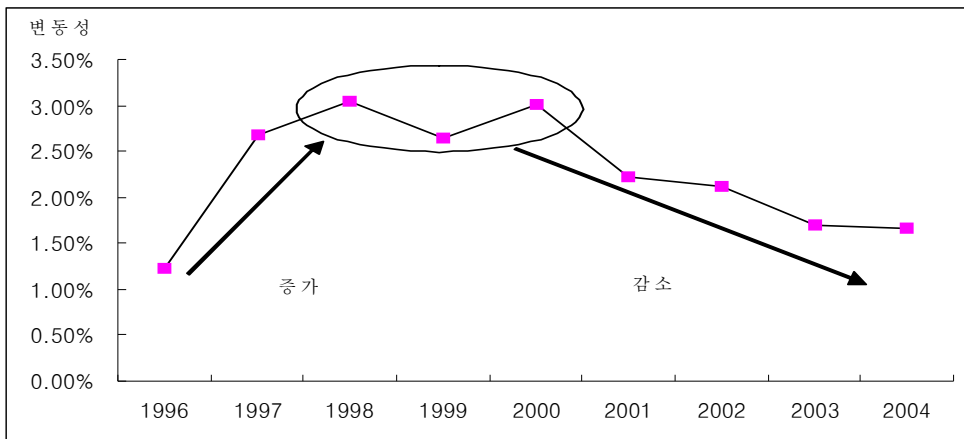
참여가 활발해 진점도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증가하던 거래량이 최근 들어 감소 추세로 전환하면서 파생상품시장의 모습은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03년 4월을 최정점으로 선물 및 옵션시장의 거래규모가 감소 추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량 감소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물시장의 변동성이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1997년 외환위기, 2001년 9.11사태 등의 엄청난 경제적 충격과 함께 계속 증가하던 변동성이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그림 2-1) 이에 따라 거래량도 서서히 줄어들고 있고 “모래뿌리기” 정책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둘째 투기 성향이 강한 개인투자자의 시장참여가 감소하고 있다. 현물자산 위험관리 등에 치중하는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의 시장참여가 증가하는 반면에, 투기성향이 강한 개인투자자의 시장참여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그림 2-2) 단기차익을 노리고 선물옵션시장에 참여하는 투기세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즉 시장 개장 후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한 손실을 보고 시장을 떠나는 투자자가 늘고 있는 데에 기인하는 바 크다.

< 그림 2-1 : 연도별 주식시장 변동성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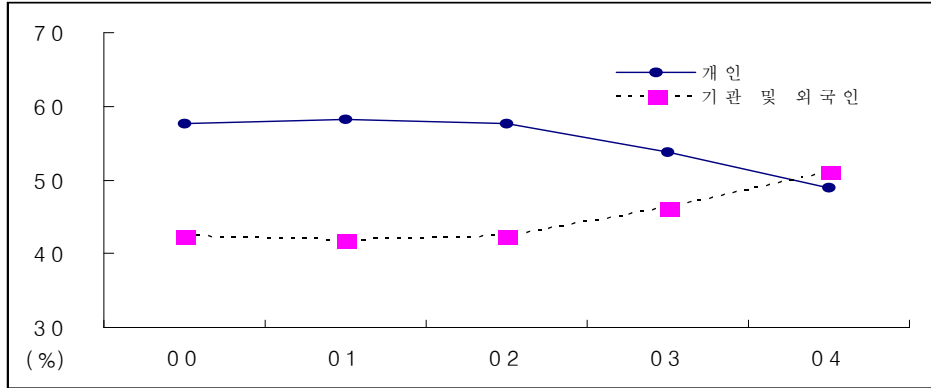
셋째 선물시장 참여계좌수가 2003년 2월에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고 있다. (그림 2-3) 이는 2003년 3월에 실시된 기본 예탁금 인상 등의 거래비용의 증대조치가 효력을 발휘하면서 시장참여자를 감소시키고 있는 데에 기인하고 있다. 결국 새로이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줄어들면서 거래량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2. 국채선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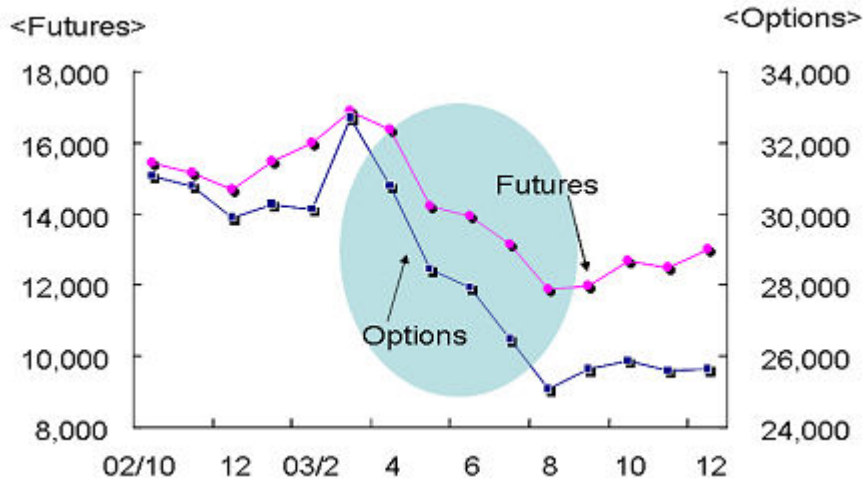
한국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선물의 거래규모는 2003년 기준 세계 29위(FIA자료 거래량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3년 만기 국채선물의 거래량은 선물거래소 전체 거래의 77%를 차지(2004년 반기기준)하고 있는데 이는 CD선물, 금선물 등 다른 선물이나 옵션이 유동성이 없거나, 거래규모가 매우 작은 데에 기인한다. 그런데 최근 국채선물의 거래규모도 감소하고 있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표 2-4) 즉 2002년을 최정점으로 3년 만기 국채

선물의 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KOSPI 200 주가지수 선물과 비슷하게 계좌 숫자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2-5)

<그림 2-2 : 연도별 투자자의 선물·옵션시장 참여 비중 추이 >



< 그림 2-3 : 선물·옵션시장의 참여계좌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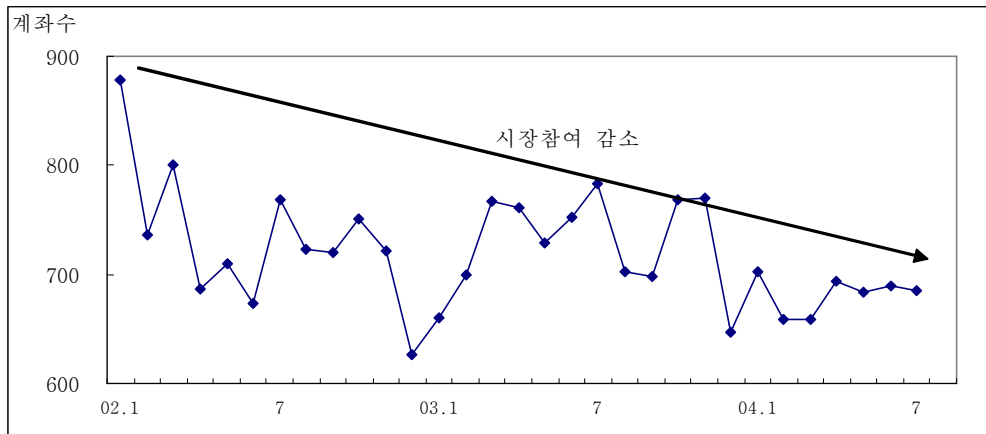


< 표2-4: 연도별 국채선물 거래 추이 >

(단위 : 만 계약, %)

년 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월평균거래량	12.7	77.7	106.4	85.7	62.7
증감률	-	512	37	-19	-27

< 그림 2-5 : 선물거래소 선물·옵션 계좌 수 추이 >



3. 국내선물 시장 전망

국내선물시장에는 변동성감소, 거래량 감소, 신규참여자 감소의 3감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파생상품 거래규모는 당분간 정체내지는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 시장효율화를 위한 각종 장기투자 활성화 정책 및 선진제도의 도입이 지속될 경우 기관투자자의 참여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줄어들면 변동성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외는 있으나 선진국의 경우 거래비용의 증가, 대체상품의 등장 등으로 인해 거래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돌발적인 충격이 없는 한 감소추세가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초기의 과잉기대가 많은 개인투자자들을 유인하였으나 이익 본 사람보다는 손해 본 사람이 월등히 많은 선물 및 옵션시장의 10/90법칙에 의해 퇴출당하는 개인투자자가 많아지면서 시장은 자연스럽게 거래량 감소를 수반한 안정기로 접어드는 단계로 보인다.

또한 최근 BRICS국가의 부상과 함께 인도 중국 등에서 파생상품이 활성화되면서 일부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시장이탈도 점쳐지고 있다. 이들 후발국들은 기관투자자 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한 채 개인 투자가 비중이 높고 주식시장 변동성이 매우 높으므로 향후 외국인 투자자의 집중 공략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한국시장에 참여하던 외국인이 이들 시장으로 대상을 바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또한 국내파생상품시장이 상당히 안정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로 대만의 주가지수옵션 거래량 성장률은 20403년도에 1287% 이었고 인도의 주가지수선물거래량 성장률은 2003년도에 865%를 기록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는 향후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성장이 예상된다. 이미 주가지수와 연계된 ELS 등의 장외파생상품을 은행, 증권회사 등이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투자자들 역시 저금리시대에 저축 등의 대체 수단으로서 ELS 등 장외파생상품이 가미된 금융상품을 선호함에 따라 다양한 복합상품이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장외상품은 장내상품에 대해 보완적 관계와 대체적 관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이 자체의 성장이 장내상품을 급격히 위축시키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장내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보면 국내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3감 효과가 지속되면서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모래뿌리기 정책”의 필요성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II. 파생상품거래의 과세제도 도입의 필요성²⁾

3.1 파생상품 거래 관련과 세문제

파생상품거래로 인하여 기존의 세제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지를 소득구분의 유명무실화와 과세소득간의 형평성,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조정을 통한 조세유예, 비거주자의 과세회피로 나누어 살펴보자.

1. 소득구분의 유명무실화와 과세소득간의 형평성 문제

소득세법상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 파생상품거래를 매개로 하여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별을 무너뜨리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와 주식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콜옵션과 풋옵션을 각각 매도 및 매입하는 경우에 동일한 소득이 발생된다. 그러나 후자에 의한 소득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언제 소득으로 인식할 지에 대해 올바른 과세처리방안을 마련해 두지 않는다면 조세차익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즉 현실의 금융거래에서는 복잡하고 정교하게 고안된 다수의 파생상품거래를 조합하여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과세요건을 회피하는 장치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파생상품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조정을 통한 조세유예 문제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시기를 조정하여 조세납부를 이연할 가능성이 제기될 수도 있다. 가령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권리의무 확정주의원칙 하에서 발행사채의 지급이자는 기간별로 손금산입되고 매입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처분시점까지 납세의무가 이연되므로 이를 이용한 손익의 귀속시기 조정이 가능해진다.) 미국세법에서는 이러한 거래가 조세회피를 위한 거래로 인정되면 지출된 지급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주식의 취득원가에 가산함으로써 손금불산입하고 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검토해 보자.

3. 비거주자의 과세회피

소득세법 제3조는 거주자의 납세의무를 소득세법상 규정된 소득에 대해서,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19조와 시행령 제179조에서 규정한 소득에 대해서만 각각 인정하고

2) 정영기·백원선. 2000, "파생상품거래의 과세방안," 회계와 감사연구 제36호, 한국공인회계사회. pp.240-242.

있다. 한편 외국법인의 납세의무는 법인세법 제55조와 시행령 제1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문제는 위 법조문 역시 파생상품거래가 활성화되기 이전의 전통적 금융상품에 대한 거래를 전제로 하고 만들어진 조문이고, 파생상품거래이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경우가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수익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할 경우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따라서 파생상품 거래를 이용하여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받는 전통적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으로 변형시키는 경우 현행 세제는 이에 대해 무방비상태에 있다.

가령주식의 콜옵션과 풋옵션을 이용하여 이자소득과 경제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소득을 실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득을 파생상품거래손익으로 둔갑시켜 원천징수를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옵션거래와 선도거래를 결합하여 금전소비대차거래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얻으면서 외형상 파생상품거래라는 이유로 사실상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를 피할 수도 있다. 이밖에 스왑거래시 일방의 스왑거래지급은 정기적으로, 상대방의 지급은 비정기적으로 즉, 스왑계약일에 단 한번만 지급하는 방식(single up-front payment)을 계약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스왑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금전소비대차거래이면서 단지 수취이자의 원천징수회피를 위한 도구로 전용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OECD 1994).

이외에도 계약기간 종료시점에서 재계약을 통해 유리한 사업연도에 손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계약기간의 연장(tax timing option)과 매입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을 동시에 취하여 사업연도 말에 손실이 발생한 포지션만 실현시키고, 이익이 발생한 포지션에 대해서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시키는 straddle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조세이연 또는 절세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

3.2 파생상품 관련 현행 규정에 대한 검토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해 현행 세법의 관련 규정은 무엇인지 또 기존의 세법규정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 금융상품이 현행법상 어떻게 과세되는가를 살펴보는 까닭은 첫째, 현행법에서는 파생상품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통적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방안을 유추 확장해서 적용할 가능성이 없는가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함이고, 둘째, 현행 규정에 의해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기초를 마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떻게, 또 어떤 내용을 보완하여야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근본적으로 현행 세제 하에서는 파생상품거래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명문화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즉 현행세법은 기존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파생상품거래관련 소득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은 발견할 수 없다. 현행세법에 따른 파생상품 관련 소득의 과세는 전통적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를 파생상품거래에 유추 내지는 확대적용하는 몇 개의 예규에 기초하고 있을 뿐이다. 이하에서는 현행세법규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파생상품거래의 세제합리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현행 과세규정은 단지 기본통칙이나 예규로서만 존재하고 있을 뿐인데 이들을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쟁점별로 정리해보기로 한다. 또한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와 평가손익의 회계처리에 관해서는 기업회계기준 해석 53-70으로 정비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는 국제기본법상의 기업회계기준중의 원칙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

해서도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이다.

(1) 선물환거래에 관한 기본통칙

1988. 3. 1 신설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4...17은 선물거래로 인한 환차손익에 관한 것으로서 "선물거래로 인하여 생긴 환차손익은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을 적용하고,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의해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거나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상의 회계처리기준이 없는 경우의 선물거래 등의 손익은 실질적인 거래가 성립되는 날(계약서상의 매매기준일 또는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1998년 세법의 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폐지되면서 이 통칙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이 기본통칙이 제정될 1988년 당시는 우리나라에 선물거래제도가 도입되기 전이라 통화선도거래만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에 대해 이 통칙을 적용하게 되면 일일정산에 의해 매일 실현되는 손익이라도 결제시점(거래소에서 계약이행일)까지 전혀 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결제시점에 가서야 전액 손익에 계상된다는 결과에 도달한다. 또한 선물거래로 인한 환차손익이외의 상품이나 지수, 이자율 등에도 유추해서 적용한다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하는 기준으로 권리의무 확정주의 원칙에 충실하려는 입장임을 이해할 수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와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옵션 등의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규정으로 타당하지 않다.

(2) 선물거래계약 갱신에 관한 예규 및 선물환계약연장에 관한 예규

(구)재무부예규 법인22631-39(1992.2.10)에 의하면 "선물거래계약의 만기일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당해 선물거래손익은 연장계약의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라고 규정하여 선물거래손익의 귀속시기를 재계약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해석하였다. 한편 국세청 예규 법인22601-3776(1988.12.23)에 의하면 "선물환거래에 있어 당초 계약서상의 매매기준일에 실질적인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의 조건변경에 불과하므로 선물환거래로 인한 환차손익의 귀속시기는 수정된 계약서에 따라 거래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된다" 이 외에도 통화스왑에 관한 예규(국세청 예규 국일 22601-505(1988. 12. 3))가 있으나 앞에서 논의한 국세청예규 법인22601-3776(1988. 12. 23)과 유사한 내용이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환관리규정에는 선물환거래에 있어 historical rate rollover 금지조항이 마련되어 있다.(제2-54조 제2항) 즉 이미 체결된 선물환거래의 금액변경, 또는 기간연장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이를 위한 새로운 선물환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과 거래당사자는 이미 체결한 거래에서 발생한 환차손익을 반드시 계약조건변경시점 또는 새로운 선물환거래계약 체결시점에 정산·수수하여야 하며, 이것을 선물환율에 반영하는 방법 등으로 환차손익을 보상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또한 거주자와 외국환은행간의 통화스왑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양당사자는 이미 체결된 거래에서 발생한 환차액을 반드시 정산·수수한 후 새로운 통화스왑거래를 시작하여야 하며 이를 새로운 계약의 환율이나 이자율에 반영하는 방법 등으로 보상할 수 없다(제13-1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계약연장의 경우 (구)재무부 예규 및 국세청 예규와 외국환관리규정상 손익의 인식시점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계약의 변경시점 또는 새로운 계약 체결시점에서 파생상품 거래 손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위의 예규는 폐지 또는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도거래와 선물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통칭하여 선물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거래

소에서 거래되는 선물거래와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선도거래의 실질을 반영한 과세규정에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한 내용도 선물환계약에만 국한하고 있으므로 선물환계약이외의 상품, 주가지수, 이자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도거래의 계약갱신, 연장의 경우에 대해 동일한 해석을 해야 할 지도 의문이다.

한편 파생상품 거래 손익에 대한 소득의 구분에 관해서 소득세나 법인세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교육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 과세표준인 외환매매익이라 함은 과세기간 중 현물환, 선물환, 스왑금융 등 외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총매출금액(또는 이익)에서 총매입금액(또는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으로써 위험회피회계의 수용가능성을 유추해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구)재무부조제22601- 115 (1991. 5. 24)

이와 함께 통화옵션거래에서 수취한 프리미엄과 지급한 프리미엄의 성격에 대한 (구)재무부의 해석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당시 재무부의 세제조사과는 "통화옵션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검토"(1993. 4)에서 통화옵션의 매도시 수취한 프리미엄 전액을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옵션프리미엄의 성격을 올바르게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귀속시기도 과세목적상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나 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않다.

(3) 주식매입 청구권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1997. 1부터 "주식매입 청구권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정되는 주식옵션은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파생상품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다만 옵션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옵션행사로 인한 이익도 주식양도차익에 포함시키도록 조특법 제15조에 규정함으로써 스톡옵션의 경우 옵션을 기초상품인 주식과 연계시켜 과세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IV. 주요국의 파생상품과세제도 현황³⁾

1. 미국

미국의 파생금융상품 관련 과세제도는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크게 네 차례에 걸쳐 변천하여 왔다. 1981년 이전에는 IRC(Internal Revenue Code)에 따라 과세처리가 이루어졌으나, 1981년 이후에는 ERTA (Economy Recovery Tax Act)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정되었고, 이후 1986년 레이건 행정부의 조세개혁조치의 일환으로 크게 수정되고 보완된 다음, 마지막으로 1997년 Taxpayer Relief Act of 1997이 발효되어 IRC의 새로운 section 1259가 추가되어 파생상품에 대한 간주매출규정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가. 거래세 : 모두 비과세

나. 자본이득세 : 모두 과세

유가증권거래가 활발하였던 미국에서는 1913년 소득세법이 도입된 이후 유가증권의 양도이익 즉,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하여 일관되게 과세하고 있으며, 파생상품거래

3) 김낙희. 2005.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조세정책방향". 조세법연구XI-2. 한국세법학회. 세경사.

에서 발생한 손익은 법인·개인 구분 없이 세제상 자본이득으로 간주되어 초기부터 과세되고 있다.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분리 과세되어 오다가 1987년부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소득별 세율로 종합 과세되고 있다.

2. 일본

일본의 경우에는 선물거래, 선도거래, 스왑거래 및 옵션거래 등의 파생상품거래의 손익의 귀속시기 등에 관해서 법인세법상 처리의 통일을 꾀하기 위하여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세무상의 취급을 정한 개별통달「금융상품에 관한 법인세 취급에 관해서」(과법2-11(예규)(1998. 10. 30))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 거래세 : 모두 비과세(증권거래세 '99.4.11 폐지)

나. 자본이득세 : 모두 과세

유가증권의 양도이익에 대하여 개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주민세가 부과되며 법인의 경우 양도이익이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고 있다. 1887년 소득세법 제정당시에는 과세하지 않았으나 1947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종합과세원칙으로 전환하였다가 1953년부터 다시 비과세하였다.

그러나 1987년 세제개편을 통하여 1989년 4월부터 원칙적으로 신고분리과세(신청시 원천분리과세 가능)하고 있다. 즉,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다가, 1987년 세제개편을 통하여 유가증권 양도의 경우와 함께 1989년 4월부터 원칙적으로 과세하고 있다. 선물·옵션거래는 소득세법상 잡소득⁴⁾으로 타소득과 합산(손실합산도 인정)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대상이었으나 2004년부터 신고 분리 과세대상으로 변경하였다.

현물과 파생상품이 모두 신고분리과세의 대상이므로 양자 간의 양도이익(손실)을 통산 불가하며, 신고분리과세의 경우 20%의 소득세, 거주자에게는 6%의 주민세 부과된다.

3. 프랑스

가. 거래세 : 유가증권 과세, 파생상품 비과세

유가증권의 거래세율은 : 0.3%(거래대금 100만 프랑까지), 0.15%(100만 프랑 초과)이며, 매수·매도 쌍방 부담한다.

나. 자본이득세 : 모두 과세

개인이 유가증권 등의 양도에 의하여 취득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976년부터 신고분리과세의 형태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선물이나 옵션거래에 의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가 되고 있어 신고분리과세대상인 유가증권의 손익과 통산하여 과세가 불가하다.

4) 일본의 잡소득은 일본의 소득세법상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일시소득 등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포괄하는 소득으로, 우리나라의 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 등을 제외한 소득)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일본의 잡소득은 법상 명시된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망라하나, 우리나라의 기타소득은 대체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외국인의 시장참여를 유도를 통한 시장의 국제화를 위하여 비거주자가 취득한 자본 이득은 비과세하고 있다. 자본이득세는 다른 소득과 구별하여 16%의 세율로 신고분리 과세하며 사회보장세가 10% 추가 과세되어 총 26%의 세율이 적용된다.

4. 영국

가. 거래세 : 유가증권 과세, 파생상품 비과세

유가증권의 거래 세율은 0.5%(매수자)이며, 다만, 증권회사가 마켓메이커로서 매매한 경우는 비과세한다.

나. 자본이득세 : 모두 과세

1962년에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를 도입하여 주식 등의 단기양도이익(6개월 이내 매매)에 대하여 과세를 시작하였으며, 1965년부터 장기자본이득에 대하여도 과세하고 1971년부터 장단기 자본이득에 대하여 동일세율(30%) 적용하고 있다. 파생상품거래 차익 역시 자본이득에 포함시켜 법인·개인 구분 없이 1988년부터 모든 자본이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20%, 23%, 40% 3단계)하고 있다.

유가증권, 파생상품 모두 소매물가지수(RPI)를 이용하여 취득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자본이득금액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고 있다.

5. 독일

가. 거래세 : 모두 비과세

나. 자본이득세 : 원칙적으로 모두 비과세

자국의 금융시장 육성을 위하여 유가증권의 양도, 파생상품 거래로 취득하는 자본이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비과세하지만, 6개월 이내의 단기매매의 경우에는 투기적 매매로 간주하여 종합과세한다. 투기매매에 따른 손실은 당해연도 투기매매이익에 대한 공제는 가능하지만 다른 소득의 공제는 불가능하고, 공제되지 않은 부분은 익년도로 이월 불가하다. 소득세율은 최저 25.9% 최고 53%까지의 누진세율 적용한다.

6. 스위스

가. 거래세 : 유가증권은 과세, 파생상품은 비과세

유가증권의 거래세율은 0.15%(연방인지세) + 0.015%(州인지세)이며, 州인지세(주세0.01%+ 증권거래소세 0.005%)이다.

나. 자본이득세 : 원칙적으로 모두 비과세

주식매매가 사업 활동이라고 간주될 경우 과세하며, 법인의 경우,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법인세 부과한다.

7. 네덜란드

가. 거래세 : 모두 비과세(증권거래세 1990.7 폐지)

나. 자본이득세 : 원칙적으로 모두 비과세

사업용 자산으로 간주하는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 대해서는 통상의 소득세율로 과세하며, 법인의 경우,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법인세 부과 한다.

V. 한국의 파생상품과세제도 개선방안

5. I파생상품 거래별 손익의 인식과 과세방안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어떤 손익이 발생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과세소득의 성격과 그 귀속시기에 대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스왑, 선물, 선도, 옵션의 4가지 파생상품거래유형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에 따른 손익과 그 귀속시기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여기에서 손익의 귀속 시기는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매 과세연도마다 인식할 것인가(즉 평가손익에 대한 과세를 도입할 것인가) 아니면 당해 파생상품거래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만 인식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집약된다. 특히 소득의 종류에 따라 그 귀속시기를 달리하는 과세제도 아래에서는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손실을 앞당기고 이익을 미루는 조세차익거래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손익의 귀속 시기는 파생상품거래의 합리적 과세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한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는 국세기본법상의 기업회계기준중원칙(法法43조)에 입각하여 현행 기업회계기준 해석 53-70에 규정된 파생상품의 평가방법과 평가손익 및 거래 손익의 인식에 관련된 회계처리를 세법상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자.

1. 스왑거래

스왑거래에 있어 예견되는 과세문제를 조명해보기 위하여 다음에 제시하는 간단한 사례에서 시작하여 좀더 복잡한 사례까지 단계적으로 블록쌓기식 접근을 통해 검토해 보도록 한다.

(1) 과세소득의 인식시기

법인세법에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하는 기준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法法40). 권리의무 확정주의라 함은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대가를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손비가 발생한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손익의 귀속기준을 말한다. 법인세법상의 권리의무 확정주의는 기업회계 상 손익인식기준인 수익의 실현 및 비용의 발생주의와 차이가 있으며, 권리의무 확정주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급이자 지급하였거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자를 후급 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일까지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급약정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라도 이미 경과한 이자부분에 대하여 이자비용을 계상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비용을 계상한 때를 손금의 귀속시기로 한다(法法 40)

① 권리확정요건

- a.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기업회계에서 수익의 획득조건에 해당됨).
- b. 재화나 용역의 제공대가를 수취하기로 약정한 날이 도래하여야 한다.

② 의무 확정 요건

- a.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계약에 따라 제공받기로 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아야 한다.
- b.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도래하여야 한다.

(2) 과세소득의 성격

(3)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에 대한 세법상 수용가능성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결산일에 파생상품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공정가액 위험회피라면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되, 현금흐름 위험회피라면 평가손익을 당기에 인식하지 않고 이를 자본조정으로 이연하여 위험회피대상거래가 발생된 시점(자산, 부채발생거래) 또는 위험회피대상거래가 발생하여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연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파생상품 평가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되는 매매목적의 파생상품거래를 전제로 검토해본 다음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의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IV장 가. 위험회피회계의 수용여부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결산일 현재 스왑계약의 공정가액을 구해야 한다. 향후 예상되는 LIBOR의 변동이 수취하게 될 고정이자율 8%보다 낮은 범위 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A는 LIBOR와 8%의 차이에 해당하는 현금흐름을 스왑계약기간에 걸쳐 수취하게 되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따라서 이 유리한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만큼 스왑계약자체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를 스왑평가이익으로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하게 된다. 만일 그 반대의 경우라면 부채로 계상하고 스왑평가손실을 계상하게 될 것이다. 한편 2001. 4. 1 스왑결제일에 발생하는 수수차액은 스왑거래손익으로 당기손익으로 계상한다. 2001년 결산일에도 역시 스왑계약자체의 공정가액을 산출하여 대차대조표상에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하되 직전 결산일에 계상되어 있던 스왑계약의 공정가액과의 차액 즉 변동분을 스왑계약평가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여기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스왑거래의 회계처리의 세법상 수용가능성은 결국 스왑평가손익을 과세대상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자산평가의 임의성에 따른 소득조작 방지, 실현된 이익에만 과세한다는 현행 세법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

재의 스왑계약 자체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입수하기 곤란하다는 점과 평가손익의 실현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과세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와는 달리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파생상품에 대해 결산일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세법규정에 의할 경우 자산의 임의평가중에 해당되므로 이는 세무조정 대상이 된다. 한편 스왑결제일에 인식되는 스왑거래손익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상의 회계처리를 수용하더라도 과세소득의 귀속시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4) 미국과 일본의 과세방안에 대한 검토

현행 세제 하에서는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규정이 미비 되어 있기 때문에 파생상품 거래가 활성화된 미국과 일본의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 제도를 중심으로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손익의 귀속시기와 과세처리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의 파생금융상품 관련 과세제도는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크게 네 차례에 걸쳐 변천하여 왔다. 1981년 이전에는 IRC(Internal Revenue Code)에 따라 과세처리가 이루어졌으나, 1981년 이후에는 ERTA (Economy Recovery Tax Act)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정되었고, 이후 1986년 레이건 행정부의 조세개혁조치의 일환으로 크게 수정되고 보완된 다음, 마지막으로 1997년 Taxpayer Relief Act of 1997이 발효되어 IRC의 새로운 section 1259가 추가되어 파생상품에 대한 간주매출규정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편일본의 경우에는 선물거래, 선도거래, 스왑거래 및 옵션거래 등의 파생상품거래의 손익의 귀속시기 등에 관해서 법인세법상 처리의 통일을 꾀하기 위하여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세무상의 취급을 정한 개별통달 「금융상품에 관한 법인세 취급에 관해서」(과법2-11(예규)(1998. 10. 30))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스왑거래에 대한 과세규정은 스왑결제금액확정일에 스왑거래로부터 수수하게 될 금액을 스왑결제일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당해 사업연도분에 대한 해당일수만큼 안분계산하여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U.S. Internal Revenue Code에서 스왑계약은 명목원금계약(Notional principal contracts NPC)이라는 포괄적인 계약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NPC라는 것은 section 1.446-3에 의하면 "당사자의 일방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일정대가 또는 이에 상응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과의 교환으로 명목원금에 특정지수를 고려하여 계산된 금액의 지급을 규정하는 금융상품"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 포함되는 금융상품에는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주가지수(equity index)스왑, 지분(equity)스왑, basis 스왑 등, 이와 유사한 경제적 계약이 있다. 이러한 NPC의 정의에 따르면 선도거래, 선물거래, 옵션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section 1.446-3에 의하면 스왑결제일에 있어 스왑수수차액에 대한 지급형태를 정기적 지급, 비정기적 지급 그리고 계약종료시 지급으로 규정하고, 지급형태에 따라 상이한 과세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정기적 지급은 NPC에 대한 전체 계약기간동안 1년 또는 그 이하의 기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수취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비록 대가를 수취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어도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대가를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을 준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논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급약정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미 경과한 이자부분에 대하여 이자비용을 계상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비용을 계상한 때를 손금의 귀속시기로 한다는 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法法 40).

나. 선물거래

(1) 과세소득의 인식시기

파생상품 거래손익을 결제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은 파생금융상품으로부터의 손익을 미실현된 자본이득으로 보는 사고에서 출발하는 것이나, 파생상품 중 선물, 옵션 등은 일일정산이라는 특수한 제도를 통하여 파생상품의 가격 변동분에 대해 즉각적으로 증거금의 수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경우 파생상품 거래손익을 평가손익으로서 미실현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금전채권 또는 채무가 수반된 실현손익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생상품거래의 본질을 살리고 과세소득의 기간조정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파생상품 거래손익의 인식을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시가의 입수가능성을 전제로 시가기준으로 전환하여 과세하는 것이 입법론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이 점에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의 경우 일일정산에 의해 과세대상이익의 공평하고도 정확한 계측이 가능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위해 보유자산을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문제도 없다. 더구나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선물거래의 일일정산 손익은 거래증거금 계좌에 직접 반영되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고 하기보다는 일일정산손익에 대한 과세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에 관한 한 문제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

(2) 과세소득의 성격

현재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가지수선물, 옵션은 증권거래법 제2조의 2(유가증권지수의 유가증권 의제 등)에 의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로 의제되어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증권거래법 제2조의 2(유가증권지수의 유가증권 의제 등)에 의하면 ① 주권 기타 유가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주가지수 기타 유가증권지수로서 증권거래소가 지정하는 것(이하 "유가증권지수"라 한다)은 유가증권으로 본다.② 유가증권지수에 대하여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당사자가 사전에 정한 유가증권지수의 수치와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현실로 나타나는 유가증권수치와의 차에 의해 산출되는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이하 "유가증권의 선물거래"라 한다)는 이를 유가증권의 매매로 본다.③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지수의 수치는 이를 유가증권의 가격으로 본다.[본조신설 94.1.5] 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 (유가증권의 지정)의 5.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이하 "유가증권옵션"이라 한다.) 가. 주권의 매매거래 나. 사전에 설정된 유가증권지수(법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치 또는 주권의 가격의 수치와 당해 의사표시를 행하는 시기에 현실로 나타나는 유가증권지수의 수치 또는 당해 주권의 가격의 수치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 다.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법 제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따라서 유가증권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에서 서 있는 법인세법의 입

장에서는 소득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자명하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은 소위 소득원천설의 입장에서 있으므로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해서 다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정한 소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비로소 과세소득이 된다. 금융거래 관련 소득에 적용될 수 있는 소득의 종류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양도소득은 재고자산이외의 일정한 법정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한 차익 즉 실현된 자본이득(capital gain)이라는 점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로 의제된 주가지수선물, 옵션 등의 선물거래손익은 양도소득과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양도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과세소득이 아닌 것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선물거래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면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에서 자금흐름의 왜곡현상이 초래되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세제의 전면적인 개편이 수반되지 않는 선물거래소득의 과세방안은 실현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선물거래에서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차 증대되고 있지만 개인의 과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의 과세문제에 대해 소득원천설에 따른 열거주의의 과세를 취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입장에서는 열거된 규정이 없으므로 과세할 근거가 없다. 이점에서 소득의 개념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법이 취하고 있는 순자산증가설과 소득세법이 취하고 있는 소득원천설이라는 기본적인 입장의 차이로 인하여 법인과 개인간의 과세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3)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에 대한 세법상 수용가능성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선물거래의 회계처리 원칙은 거래소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의해 일일정산을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일일정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모두 거래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선물거래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정보이용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중에는 '정산손익'이라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되, 전매, 환매, 결산 및 최종 결제시에만 선물거래손익으로 인식한다.

여기에서 선물평가이익은 거래소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의해 일일정산한 '정산손익'계정 잔액을 의미하나 전매, 환매, 결산 및 최종 결제시에는 '선물거래손익' 대체되기 때문에 사실상 선물거래에서의 평가이익은 기중에만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선물거래평가손익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를 세법상 수용하더라도 별도의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마찬가지로 선물거래이익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결과를 세법에서 수용하여 과세대상으로 처리하는 데에도 아무런 문제는 없다. 따라서 전매, 환매, 결산 및 최종 결제시 증거금 계좌에 직접 반영된 선물거래손익에 대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는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 없을 것이다.

(4) 미국과 일본의 과세방안에 대한 검토

선물거래에 대한 과세는 section 1256 시가평가계약(Contracts Marked to Market)에 규정되어 있다. 선물거래에 대한 과세논리는 거래소에서 형성된 가격에 의해 일일정산(marking to market)을 하는 경우 소득의 수입으로 간주(constructive receipt of income)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물계약의 만기전이라도 계약으로부터의 이익을 증거금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나 이득의 보고가 이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미국세법의 입장은 경상이득(ordinary income)이냐 아니면 자본이득이냐를 구분하는 문제와 또 자본이득이라면 장기냐 단기냐를 구분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는 논외로 하기

로 하고 선물거래손익을 만기결제 전이라고 하더라도 일일정산에 의해 과세소득으로 인식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한편선물거래에 대한 과세처리에 관하여 일본 세법의 입장은 미국의 규정과 매우 유사하며 차액결제를 한 경우와 수도결제를 한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먼저 선물거래의 차액결제에 관련된 손익은 전매 등 또는 최종결제의 성립에 의해 매수주식 또는 매도주식에 관련된 가격과 리스크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이전한 것과 동시에 손익이 확정된다는 관점에서 결제차액은 당해 전매 등의 약정일 또는 최종결제에 관계된 거래최종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거래소의 규정에 의해 선물거래의 차액결제는 약정일에서 4영업일 이내라고 하는 단기간에 행해져 오고, 결제기일에 있어서 손익을 인식해도 과세상의 폐해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계속적용을 조건으로 결제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수도결제에 의해 유가증권 등을 인도한 경우의 손익은 당해 수도결제에 관련된 선물거래의 거래최종일에 손익이 확정된다는 관점에서 당해 거래최종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도결제가 현물매매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용을 조건으로서 수도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일정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결산일 현재의 선물거래손익에 대한 과세규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 선도거래

(1) 과세소득의 인식시기

선도거래는 단지 미이행계약에 불과하므로 대차대조표 계상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어 왔으며, 그 결과 재무제표의 주식사항으로 공시하는 정도의 회계처리 대상으로 간주되어왔다. 그러나 파생상품거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한 재무적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이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체제 내에서 인식하고 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보고하게 되었다. 가령 2000. 8. 1 국내의 수출업체는 2001. 3 회수될 \$10,000의 매출채권에 대해 환율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고자 2001. 3을 만기로 하는 통화선도계약을 그 당시의 통화선도환율인 \$1:₩1,150으로 체결하였다. 이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2001. 3 만기의 통화선도환율이 \$1: ₩1,150 이상 또는 이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경우에는 단지 통화선도계약 자체를 미이행계약으로 보아 재무상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또 세무상으로도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2000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통화선도계약자체가 유리한 또는 불리한 경제적 결과를 가져온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자산·부채로 계상하고, 평가손익은 당기순손익계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회계처리기준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한편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해서 결산일의 환율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과세소득에 반영하고 있는 현행 세법규정에 비추어 위에서 논의한 통화선도계약에 대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일관성을 견지하도록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통화선도거래이외의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선도거래는 계약당사자의 수요에 맞추어 설계되고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특성 때문에 공정가액 산출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이 통화 또는 이자율을 대상으로 하는 선도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금융기관인 경우 객관성 있는 공정가액의 산출이 가능하므로 선물거래에 대한 과세논리를 수용할 수 있을 것

이다. 금융기관의 파생금융상품거래 회계처리기준(한국은행 은행감독원 1996)이나 기업회계 기준의 파생상품등의 회계처리 해석에서도 시가 또는 공정가액평가를 규정하고 있고, 조세 목적상으로도 시가평가 도입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이같은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이성우 1997).

(2) 과세소득의 성격

선도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은 보유하고 있는 선도계약 자체가 유리한 경제적 결과를 가져온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불리한 경제적 결과를 가져온 상태에 있느냐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각각 자산·부채로 계상하게 된다. 일단 공정가액으로 평가된 자산, 부채는 이후의 결산일 또는 결제일에 다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산출하게 되나, 결제일 또는 환매, 전매도일, 청산일 등에는 선도거래손익이 발생된다. 따라서 과세소득을 구성하는 요소는 자산·부채의 평가차익과 선도거래손익으로 구분되며, 이에 대한 과세소득의 성격은 앞에서 논의된 스왑거래손익, 선물거래손익과 동일하다.

한편 선도거래의 시가평가지 시가평가의 대상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로 제기된다. 현재 금융기관회계처리기준이나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과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시가평가하여 그 평가손익이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지만, 세법상으로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만 과세소득에 반영되고 그 밖의 경우 시가법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통화선도거래의 경우에는 시가평가에 따른 과세제도의 도입이 용이할 것이나 주식이나, 채권, 이자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도거래에 대해 과세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전면적인 조세제도의 개편 없이는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3)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에 대한 세법상 수용가능성

기업회계기준의 선도거래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은 파생상품등의 회계처리 일반원칙을 준거하게 되므로 결산일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를 다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③ 과세처리방안

i) A의 입장에서는 기업회계기준상의 선도평가이익으로 당기손익에 계상된 \$185,185만 원을 과세소득으로 계상할 수 있을지 검토해봐야 한다. 선도거래에 대해서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므로 객관성 있는 공정가액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과 유동성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선물거래와는 달리 양도하거나, 반대매매 등을 통하여 청산하거나 결제하기 전까지는 과세소득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거래되고 있는 선도거래의 대부분이 객관적으로 공정가액을 구하는데 필요한 환율, 이자율 등의 변수가 입수가 가능한 통화, 이자율 관련 계약이고, 또 거래상대방 역시 금융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통화, 이자율 이외의 선도거래에 대해서도 공정가액을 산출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평가모형을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고, 화폐성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차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세법규정에 비추어 선도거래의 평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데에는 기술적으로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현행세법규정에 의할 경우 자산의 임의 평가증감에 대한 익금, 손금불산입 규정,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과의 조화문제 등 세제 전반에 대한 입법론적 차원에서의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ii) 한편 B의 입장에서도 선도평가손실을 세무상 손금으로 인식해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서도 명문화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지만 위에서 논의한 A의 경우와 대칭적인 입장에서 과세처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4) 미국과 일본의 과세방안에 대한 검토

미국세법에서는 선도계약에 대해 당사자사이의 필요와 수요에 의해 상품이 설계되고,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므로 표준화된 거래조건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적을 수 있다는 점과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거래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선물거래와는 달리 상대방의 이행능력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용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두 가지 큰 차이 외에는 선물계약과 경제적 본질은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선도계약의 계약당사자가 이 계약을 어떻게 종결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 경우로 나누어 과세처리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나, SFAS 133의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선도거래의 결산일 현재의 공정가액 평가와 이에 따른 선도거래평가손익에 대한 과세문제는 다루고 있지 않다.

① 기초자산을 인도하여 계약을 종결하는 경우의 과세처리

선도거래의 계약조건에 의해 수도결제통을 통하여 계약을 종결하는 경우에 대해 앞에 제시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A는 취득한 건물의 취득원가로 \$1,000,000을 계상하고, B는 \$300,000의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선도계약의 결제일에 인식하는 것으로 세무상의 처리를 마감한다. 비록 선도거래의 회계처리는 SFAS 133에 의할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에 선도계약의 공정가액을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초자산을 인도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이 평가손익을 과세대상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② 반대매매계약체결

거래소에서 제3자와의 반대매매가 체결되는 선물거래와는 달리 선도거래는 선도계약을 체결했던 당사자와의 반대매매를 통해 청산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반대매매를 하는 경우 동일한 자산에 대해 back-to-back sale로 간주하여 과세처리 하고 이익과 손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③ 선도계약자체를 처분하거나 양도

선도계약은 당사자간의 계약이므로 선도계약자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래 계약당사자로서의 의무는 계속 남아 있게 된다. 이 경우 매각이나 양도를 한 시점에서 이익이나 손실을 인식하여 과세대상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④ 현금으로 청산 또는 차액결제하는 경우

선도계약을 현금결제에 의해 청산하는 경우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선도거래손익으로 거래발생일 또는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대상소득으로 인식해주어야 한다.

⑤ 선도거래에 대한 기타고려 사항

은행간 거래되는 통화선도거래로서 당해 통화가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개금융기관(dealer)이 본연의 업무상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통화에 연계된 선도거래상품도 시가평가하여 매 과세연도말에 손익에 반영시키도록 하고 있다.

한편일본세법규정의 선도거래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일반원칙은 차액결제약정일, 수도결제확정일, 양도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는 점에서 권리의무확정주의원칙에 입각하고 있으며, 계속적용을 전제로 결제일에 인식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선도거래가 계약당사자의 일방의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해약된 경우 해약청산금 실제 수입일로 정하는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세법과 마찬가지로 결산일에 선도거래 평가손익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라. 옵션거래

(1) 과세소득의 인식시기

옵션거래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사전에 정한 대상물의 매매, 파생상품거래 기타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부여하고, 당사자의 일방이 이것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약정한 거래를 말한다. 옵션거래에서 옵션 매입자는 옵션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것으로 리스크를 옵션프리미엄에 한정할 수 있고, 전매 및 양도에 의한 결제와 권리 행사일에 있어서 권리행사에 의해 손익이 발생한다. 한편, 옵션매도자는 옵션프리미엄을 수취함으로써 인하여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따른 리스크를 무한대로 져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옵션거래에서는 전매도 및 의무의 이전, 권리행사일의 권리행사에 의해 손익이 발생하며, 수수한 옵션프리미엄에 관련된 손익의 귀속시기는 다음과 같다.

최초 거래시 수수한 옵션프리미엄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계상되므로 수수시점에서 과세소득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한편 옵션의 전매, 환매시 수수된 옵션대금과 옵션권리행사시 수수된 권리행사차금과 이미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에 계상되어 있는 옵션프리미엄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전매약정일, 환매약정일 또는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귀속시킨다. 만약 옵션이 미행사되어 소멸하는 경우 유동자산 계상분은 옵션거래손실로, 유동부채 계상분은 옵션거래이익으로 소멸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귀속시킨다.

(2) 과세소득의 성격

옵션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은 보유하고 있는 옵션계약 자체가 유리한 경제적 결과를 가져온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불리한 경제적 결과를 가져온 상태에 있느냐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다음 최초 옵션계약시 수수한 옵션프리미엄에 대해 유동자산, 유동부채로 계상하고 있던 장부가액과의 차액으로 계산하게 되는 옵션평가손익이 있다. 그리고 전매, 환매 또는 행사에 따른 옵션거래이익과 옵션이 미행사되어 소멸하는 경우 발생하는 옵션거래손익이 있다. 따라서 과세소득을 구성하는 요소는 자산·부채의 평가차익과 옵션거래손익이나 이에 대한 과세소득의 성격은 앞에서 논의된 스왑거래손익, 선물거래손익과 동일하다.

(3) 기업회계기준상 회계처리에 대한 세법상 수용가능성

기업회계기준에는 거래소에서 매매목적으로 거래되는 옵션거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위탁증거금 등 옵션거래를 위한 예치금은 유동자산으로 계상한다.

- ② 옵션 매입시 지급하는 옵션프리미엄은 유동자산으로, 매도시 수취하는 옵션프리미엄은 유동부채로 처리한다.
- ③ 전·환매시 수수된 옵션대금(또는 권리행사시 수수된 권리행사차금)과 이미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에 계상되어 있는 옵션프리미엄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옵션거래손익 등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 ④ 옵션이 미행사되어 소멸하는 경우 유동자산 계상분은 옵션거래손실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하고 유동부채 계상분은 옵션거래이익으로 하여 당기이익으로 처리한다.
- ⑤ 유동자산(또는 유동부채)에 계상되어 있는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옵션프리미엄의 장부가액과 결산일 현재 옵션프리미엄가격과의 차액은 옵션평가손익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회계처리한 결과 발생하는 옵션거래손익에 대해 이를 과세소득으로 인식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위의 회계처리기준⑤는 사업연도 종료일에 옵션계약에 대한 시가를 구하여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을 인식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스왑거래평가손익, 선물거래평가손익과 마찬가지로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과세문제 역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옵션의 경우에는 선물거래평가손익과 동일하게 과세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계약당사자간에 체결된 장외옵션에 대한 평가손익의 과세대상으로의 귀속여부는 현행 세제하에서 동일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4) 미국과 일본의 과세방안에 대한 검토

옵션에 대한 미국의 과세규정은 옵션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3개 규정으로 나뉘어져 있다.

- ① section 1234 : 주식, 증권, 상품, 상품선물에 대한 옵션매입, 매도자에 적용되는 과세규정
- ② section 1256 : 일부 상장옵션, 통화옵션
- ③ section 1234A : section 1234 및 1256이 적용되지 않는 옵션매입, 매도자에 대한 과세규정

이러한 과세목적상의 구분의 실질적인 내용은 상장옵션/비상장옵션, 지분옵션(equity option)/비지분옵션(nonequity option)의 구분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지분옵션이란 주식을 사거나 팔 수 있는 또는 그 가치가 주식가격이나 주가지수 등에 직·간접으로 연계되어 결정되는 옵션을 말한다. 한편 section 1256(g)에서는 section 1256의 비지분옵션을 지분옵션이 아니면서 상장되어 있는 옵션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소 상장옵션으로는 주가지수옵션(증권거래소), 미국달러옵션(선물거래소)이 거래되고 있다.

1) Section 1256의 옵션(상장, 통화옵션)거래 과세규정

Section 1256에 의한 옵션은 비지분 상장옵션으로서 선물거래의 과세처리방안에서 논의되었던 일일정산에 의한 손익인식과 과세처리 방안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옵션의 가치상승분이 증거금계정으로 유입되고 이를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옵션평가손익을 수취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대상소득으로 처리한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상장옵션 및 통화옵션에 대한 과세처리를 살펴보도록 하자.

① 결산일의 옵션평가손익에 대한 과세

② 처분시의 손익인식

일일정산되어 평가손익이 과세소득으로 귀속된 상장옵션 및 통화옵션을 처분할 경우에는 처분일 직전사업연도에 평가손익으로 귀속된 금액과의 차액만을 인식하면 된다.

③ 행사되거나 소멸된 경우의 손익의 인식

상장옵션 및 통화옵션이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된 시점의 이익과 손실로 인식하여 과세대상으로 귀속시킨다. 행사하는 경우 매입옵션에 대해서는 옵션프리미엄을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매도옵션인 경우 기초자산의 판매가에서 차감한다.

2) 지분옵션

① 콜옵션매입

주식에 대한 매입, 매도옵션은 section 1256에 규정한 일일정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옵션을 매입한 시점에서 옵션의 매입자는 이익과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다. 즉 옵션프리미엄은 자본적 지출로 인식되어야 하고, 옵션이 행사되는 시점까지 이연계정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경우는 유동자산으로 계상될 것이다. 한편 옵션매입자가 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에서는 매입한 주식의 취득원가를 조정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 취득원가를 조정한 결과는 차후 이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을 결정하는데 고려되어야 한다.

② 풋옵션 매입

풋옵션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과세처리가 상이하다. 즉 투자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당해 주식에 대해 풋옵션을 매입한 경우라면 이를 공매도로 간주한다. 이 경우 풋옵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거래시점에서 각각 이익과 손실로 인식하고 과세소득으로 귀속시켜 주어야 한다.

3) 결합된 지분풋옵션(married equity put option)

기초자산인 주식과 이에 대한 풋옵션이 동일 날짜에 취득된 경우 이를 결합된 지분풋옵션이라고 한다. 이 경우 풋옵션이 소멸되는 경우에 풋옵션프리미엄이 손실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취득원가에 가산시켜야 한다는 점 외에는 위의 규정과 동일한 적용을 한다.

4) 지분에 대한 풋옵션이나 콜옵션 매도자에 대한 세무처리

옵션을 매각했을 경우 옵션매도자가 수취한 프리미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옵션이 행사되거나, 소멸되거나 실효될 때까지 미완결된 거래로서 이연계정을 통하여 유지한다는 것이 미국세법의 입장이다.

5) Section 1234A규정에 의한 옵션의 과세문제

이는 section 1234에 의한 지분옵션과, section 1256에 의한 일일정산 대상이 되는 상장옵션 및 통화옵션을 제외한 모든 옵션에 대한 과세규정을 말한다. 이러한 옵션에는 유동성

이 낮은 개인재산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옵션이 포함된다. 이러한 옵션에 대한 과세문제는 지분옵션의 경우와 같이 전매, 환매, 행사시점에서 옵션거래손익을 인식하여 과세대상으로 하며, 결산일에서의 옵션평가손익에 대해서는 과세목적상 특별한 고려는 하지 않는다. 한편, 일본세법규정에 의한 옵션거래에 대한 과세처리는 미국세법규정의 처리와 유사하다. 다만 행사일에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옵션계약 상대방에 대한 증여규정을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옵션거래 형태별로 옵션거래의 전매, 양도 및 환매, 반대매매 옵션거래를 한 경우, 권리행사를 하여 차액결제 또는 옵션대상물을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 해약한 경우로 구분하여 과세규정을 두고 있다.

5.2 파생상품 과세제도의 합리화 방안

주요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성격과 과세소득 귀속시기에 대해 살펴 보았으며, 여기에서는 파생상품 거래관련 과세 제도를 운영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위험회피회계의 수용여부, 부당행위 계산부인 및 증여의제규정의 적용, 간주매출 규정의 도입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위험회피회계의 수용여부

(1)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의 위험회피수단으로 파생상품거래를 지정한 경우

거래목적 이외에 위험회피목적으로 선물거래를 하고,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와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허용하고 있다. 공정가액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 항목과 위험회피 수단 모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선물거래일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인식하는 과정의 과세처리 문제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항목에 대해서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임의평가감이나 임의평가증에 대해 익금 및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 세법규정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험회피대상의 평가손익과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이 서로 상쇄됨으로써 위험이 회피될 수 있다는 것이 위험회피회계의 본질임에 비추어 과세처리도 이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가령 위험회피대상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하고, 위험회피수단인 선물거래에서 이익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순이익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어 완전한 위험회피가 달성된다. 그러나 선물거래이익만을 과세소득으로 인식하고 위험회피수단에서의 평가손실을 자산의 임의평가손익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시켜주지 않는다면 위험회피회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위험회피대상에서 평가이익이 발생하고, 위험회피수단인 선물거래에서 동액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한 자산의 평가이익을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선물거래에서 발생한 금액만을 손금으로 귀속시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위험회피회계를 세법에서도 수용하여 위험회피대상인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평가와 평가손익의 인식을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과세처리와 동일하게 허용해야만 위험회피회계의 의미가 살아날 것이다.

(2)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선물거래를 지정한 경우

선물거래 또는 선도거래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변동위험회피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부채로부터의 현금흐름변동 및 미래 예상거래로부터의 현금흐름 변동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용되기도 한다. 이같은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시켜주는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으며,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의 과세처리 방안에 대한 문제를 다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2.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여의제규정의 적용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이외에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스왑, 선도계약, 옵션의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또는 증여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예견된다. 이 중에서 계약시점에서 이자율, 가격, 만기 등이 확정되는 선도거래나 스왑거래와는 달리 옵션거래의 경우 행사여부가 계약 시점에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시점 이후의 가격이나 이자율 등 기초변수의 변동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를 통해서 계약 상대방간에 이익을 조정하거나 이연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옵션의 행사에 따른 과세소득의 귀속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을 원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있는 장외매수옵션에 관해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행사일 또는 권리행사 일에 옵션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해 거래상대방이 특수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하거나, 거래상대방이 특수 관계자가 아닐 경우에는 의제기부금으로 하여 기부금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정 계산 대상이 되도록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리한 상황에 있는 장외매수옵션에 관해서 권리행사일 또는 권리행사기간 말일에 있어서 권리행사를 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액은 권리행사를 한 날 장외매수옵션의 매도자에 대해 거래상대방이 특수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거래상대방이 특수 관계자가 아닐 경우에는 의제기부금으로 하여 기부금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정 계산 대상이 되도록 한다.

3. 간주매출 규정의 도입

(1)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간주매출 규정

미국이나 일본의 세법규정에서는 파생상품거래 중 선물거래와 같이 일일정산되거나, 거래소에 상장된 옵션과 같이 평가시점 또는 결산시점에서 객관적인 시가를 입수할 수 있거나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파생상품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파생상품거래를 이용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의 포지션을 실질적으로 매각하여 양도차익이 발생된 상태이나 아무런 조세부담을 지지 않거나 조세이연을 가져오게 되는 사례를 규제하기 위하여 Taxpayer Relief Act of 1997이 발효되었다. 이 법안에 의해 IRC에 새로운 section 1259가 추가되어 뮤추얼펀드, IRAs, 파생상품거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그 입법취지는 기초자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보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소득을 인식하지 않는 모순을 시정하고자 제안된 것이다. 특히 평가증된 포지션으로부터

의 이익이 확정된 반면 확정된 이익에 대한 과세소득으로의 인식을 이연하거나 회피하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위 법안에 의해 추가된 section 1259에 의하면, 평가증된 포지션(appreciated financial position 즉 AFP)에 대한 간주매출(constructive sale provision)로부터의 이익인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AFP란 일반적으로 어떠한 증권이라든지, 부채증서, 파트너쉽 지분에 대한 포지션으로서 그러한 포지션을 공정가액으로 매각하거나, 양도 그렇지 않으면 청산할 경우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포지션이란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 선물이나 선도계약, 공매(short sale) 또는 옵션을 의미한다. 이 경우 스왑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이는 그 본질이 선도거래나 선물거래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당연히 포지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간주매출의 규정은 최초에 파생상품계약에 대한 투자였든지 아니면 기초증권에 투자였든지 전부 포함한다. 따라서 평가증된 증권에 대한 소유주지분은 AFP를 구성한다. 그러나 section 1256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평가대상이 되는 (marked-to-market) 포지션은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포지션에 대한 간주매출은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같은 재산에 대하여 명목원금계약에 대한 반대매매(offsetting Notional Principal Contracts)를 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여기에서 계약이란 어떠한 재산에 대해서 ① 특정기간동안에 그 자산에 대해 평가증을 포함한 투자수익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지급하기로 하거나 크레딧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② 그 재산의 가치감소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해 크레딧을 받기로 하거나 보상을 받기로 하는 권리를 포함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약의 본질을 "Taxpayer Relief Act of 1997" 에서는 포지션을 유지할 경우로부터 발생하는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이전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으며 이는 교환거래가 실제 발생하여 매매차익이 실현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section 1259하에서는 공매도, 매도 스왑, 선물매도, 선도매도포지션이 평가증된 상태에서 납세의무자가 당해 계약의 대상이 된 것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간주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평가증된 포지션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평가감된 손실은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평가감된 포지션에 대한 손실의 인식은 해당 포지션을 처분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만약 간주매출이 발생하면 납세의무자는 간주매출이 발생한 날에 공정가액으로 포지션이 양도된 것으로 가정하여 이익을 인식하고 즉각 재매입한 것처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의 보유기간은 간주매출이 발생한 날에 그 포지션을 취득한 것처럼 처리한다. 그 이후기간에 있어서 실현된 이익은 간주매출에 의해 인식된 부분만큼을 조정하고 계산해야 한다. 결국결산일, 또는 평가시점의 파생상품 평가손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파생상품 거래와 결합하여 평가증된 포지션으로부터의 이익을 아무런 과세부담없이 향유하거나 조세부담을 이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증된 포지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건이나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포지션을 처분 또는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대상 소득으로 귀속시키고 있다.

- ① 포지션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재산에 대해 공매도를 개시한 경우
- ② 포지션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재산의 명목원금계약에 대한 반대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 ③ 포지션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재산에 대해 선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외에도 "Taxpayer Relief Act of 1997"에 의하면 과세소득을 인식해야 하는 상황을 추구하고 있는데, section 1233을 수정하여 어떤 재산에 대해 공매를 한 경우 그 공매한 자산이 실질적으로 무가치하게 된 시점에 마치 공매도가 청산된 것처럼 간주하여 이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파생상품 거래가 완결되기 이전 또는 청산되기 이전이라도 과세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재산에 관련된 옵션, 재산에 관련된 명목원금계약에 대한 반대매매계약, 재산을 인도해야 하는 선도, 선물계약, 무가치하게 된 이와 유사한 계약 또는 포지션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2) 주요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간주매출규정의적용

주요 파생상품에 대한 일반적 상황하에서의 과세 규정은 III장에서 자세히 논의하였다. 여기에서는 평가증된 포지션에 대한 간주매출규정에 의해 파생상품 평가이익에 대해서도 과세소득을 인식하는 사례를 주요 파생상품거래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 박스에 대한 공매도(Short Sales against the Box)

박스(Box)에 대한 주식의 공매도에 대한 AFP 해당여부와 간주매출 규정의 적용에 대한 다음의 사례를 검토해 보도록 하자.

② 선도거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해 주식에 대해 선도거래를 체결한 경우 AFP 해당여부와 간주매출 규정의 적용에 대해 다음 사례를 검토해 보도록 하자.

③ 스왑거래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같은 재산에 대하여 명목원금계약에 대한 반대매매를 하는 스왑거래에 대한 간주매출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에서 계약이란 어떠한 재산에 대해서 i) 특정기간동안에 그 자산에 대해 평가증을 포함한 투자수익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지급하기로 하거나 ii) 그 재산의 가치감소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해 크레딧을 받기로 하거나 보상을 받기로 하는 권리를 포함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약의 본질을 "Taxpayer Relief Act of 1997"에서는 포지션을 유지할 경우로부터 발생하는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이전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명목원금계약에 대한 반대매매일에 포지션을 처분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포지션의 취득원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과세소득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명목원금계약의 반대매매거래에 있어서는 만기의 제한이 없이 간주매출규정이 적용되며, 간주매출규정의 적용은 AFP에만 한정되므로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총수익스왑의 경우에 있어서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라도 이는 간주매출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스왑의 경제적 실질을 일련의 선도거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세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액결제되는 선도거래에 대한 과세와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VI. 결 론

파생상품 관련 기업회계기준이 이제 겨우 시행 초기에 있고(1999.6.30 기업회계기준 해석 53-70) 아직 이에 대한 회계 관행이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므로 당분간 현행 법인세 과세체제의 유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즉, 파생상품 거래 손익에 대해서는 현행세법에 의해 만기일, 반대매매일, 청산 일에 과세소득을 인식하는 결제기준을 적용한다. 한편 사업연도 종료일에 공정가액으로 파생상품을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과세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 옵션의 경우에는 일일정산제도에 의해 거래손익이 매일 인식될 뿐만 아니라 증거금의 인출이 자유로우므로 미 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초래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선도거래 등 장외 거래되는 파생상품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의 수용여부는 파생상품의 시가평가 및 그 평가손익의 인정여부와 손익 귀속시기의 조정 여부에 달려 있다. 또한 현행 과세체계상 기초상품에 대하여 시가평가를 배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파생상품에 대해 공정가액에 의한 평가손익을 인정한다는 것은 미 실현보유이익에 대한 과세논란의 소지가 있는 등 이는 법인세과세체제의 전반적인 검토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왜냐하면 세법은 평가의 임의성에 따른 소득조작 방지, 실현된 이익에만 과세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종전의 과세소득의 인식기준으로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고수할 경우 과세이연을 통한 조세회피 소지가 있고 기업회계와의 불일치에 따른 복잡한 세무조정을 요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점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할 경우 과세연도 말 또는 계약종료시점에 시가로 손익을 측정하는 시가기준은 비대칭적 과세문제, 기간배분을 통한 세액조정 부담의 문제, 매 과세연도 말에 재계약을 통한 조세이연 및 회피의 문제 등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가기준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불행히도 많은 장외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객관적 공정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인프라구축이 미흡하여 파생상품의 결산일 현재의 공정가액 평가와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에 대한 과세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 옵션, 외환 거래 등으로 한정하되, 스왑거래, 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거래 상대방이 파생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한편위험회피회계를 현행 과세규정 하에서 수용하는 경우라면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처리방안과는 별도로 위험회피대상인 자산·부채의 공정가액평가를 허용해야 하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이 과세대상으로 귀속되는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과세대상소득으로 인식시켜주어야 한다. 즉 현행 세법 규정상 자산·부채에 대한 임의평가증이나 평가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이를 과세대상 소득계산에 반영시켜줌으로써 서로 상쇄되어 위험회피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파생상품거래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일정요건을 충족시켜주는 금융상품이나 거래로 폭넓게 정의하여 향후 출현될 가능성이 있는 파생상품을 전부 포괄 할 수 있도록 과세방안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선도거래, 선물거래 옵션거래, 스왑거래의 4가지 형태로 유형화하여 과세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4가지 유형에 대한 소득의 귀속시기와 과세소득의 성격을 중

심으로 과세방안을 고찰하였으며, 현행 세법규정이 미비된 상황이므로 과생상품거래가 활성화된 미국과 일본의 과세규정을 위주로 검토하였다. 이외에도 과생상품의 과세와 관련하여 옵션거래에 있어 행사일에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와 행사하지 않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행사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 또는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결산일 또는 평가시점의 과생상품 평가손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과생상품 거래와 결합하여 평가증된 포지션으로부터의 이익을 아무런 과세부담 없이 향유하거나 조세부담을 이연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평가증된 포지션에 대해 간주 매출일에 공정가액으로 양도, 처분, 종료된 것처럼 매출로 간주하여 이익을 인식하도록 하는 과생상품의 간주매출규정에 대한 도입여부도 검토하였다.

參 考 文 獻

- 곽태원. 1993. “개발이익환수수단으로서의 양도소득세 합리화방안”. 정책연구자료 93-03. 한국조세연구원.
- 구자은. 1999. “과생상품 등의 회계 및 세무” 「삼일저널」 (가을호)
- 구정환. 2005. “과생금융상품의 과세문제와 향후 과제”. 주간금융브리프 14권 41호. 한국금융연구원.
- 국세청. 각 연도. 「국세통계연보」.
- 국세청. 2003.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4.3.3. “개인투자자 KOSPI 200 선물·옵션에서 손실 지속”
- 김광윤. 1997. “선물거래의 회계와 과세문제” 「세무학연구」 (제10호)
- 김낙희. 2005. “과생상품거래에 대한 조세정책방향”. 조세법연구XI-2. 한국세법학회. 세경사.
- 김석진, 김태역 등, 2007, 「과생상품의 이해」, 도서출판 청람.
- 김완석. 2006. 「소득세법론」. 광교이텍스.
- 김재진. 2003. “자영업자 과표양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김재진·한상국. 2003.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 김진수. 2004.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 노영훈. 2002.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 비교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데일리안정치. 2006.1.21. “NG내는 정부, 휘청대는 증시”.
- 민주노동당(심상정 의원 발제). 2004.8.20 “투명과세,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개혁 과제 - 부유세,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서민경제 살리기 연속토론회 2
- 민주노동당. 2005. “부유세 실현의 1단계 - 공평과세, 투명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정책자료집 05-01.
- 박원암·김상규·안종범·정영현. 1994. “금융실명제 실시 1년의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 박진우, 2007, 「과생상품론」, 명경사.
- 박형수. 2002. “세수추계정밀도 제고를 위한 제도부문별 국민계정모형”. 한국조세연구원.
- 배민근. 2005.12.28. “우리나라 지하경제 줄고 있다”. LG주간경제.
- 서기원·원재환·조동필. 2000. 「선물·옵션의 이론과 실제」 유평출판사
- 송인만·김문철. 2000. 「고급재무회계」 신영사.
- 성명제·김영준. 1998. “소득세제의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성명재. 1998. “미국과 캐나다의 세수추계”. 한국조세연구원.
- 오 윤. 2003. 「금융거래와 조세」. 한국재정경제연구소.
- 오 윤. 2005. “복합과생상품거래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XI-2. 세경사.
- 오 윤·박 훈·최원석. 2006.4.1. “금융소득 및 자본소득 세제개편방안”, 2006년 조세개혁 심포지엄 및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세무학회,
- 유배숙. 1999. 「과생금융상품 과세제도 개선방안」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시권. 1991. “비거주자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유일호. 2006. “탈세와 세무행정”. 한국조세연구원.
- 윤계섭. 1990. “자본이득세제 도입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1호.
- 윤중훈. 2002.7.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도입의 현실적 당위성”. 월간조세.
- 윤창현. 2004. “과생상품 과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특별심포지엄 자료집”. 한국선물학회 등.
- 이상신. 2005.11. “기본과생상품과세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XI-2. 세경사.
- 이성우. 1997. 「과생금융상품거래의 과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용섭. 2005. 「국제조세」. 세경사.
- 이용진. 1992. “우리나라 주식양도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3호.
- 이창희. 1996. "과생금융상품의 과세문제" 「조세학술논집」 (제12집)
- 재정경제부. 각연도. 「재정금융통계」.
- 전승훈. 2003. “지속적 발전을 위한 경제적 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전태영·변용환. 2005.11. “지하경제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 및 비세무요인”, 세무학연구 제22권 제4호.
- 정영기·백원선. 2000. "과생상품거래의 과세방안," 회계와 감사연구 제36호, 한국공인회계사회.
- 정영기. 2000. "과생상품 등의 회계처리에 대한 논리와 실무해설" 「공인회계사」 (2-5월호)
- 정영기. 2000. 「과생상품에 대한 해석 검토」 한국회계연구원.
- 정재만·김재근. 2004. “개인투자자의 옵션매매의 성과와 현황”. 한국선물학회.
- 조세일보. 2006.2.15. “이슈 진단 - 금융소득종합과세 고소득층만 호호”
- 증권선물거래소. 2005. “2004년도 주식분포 상황조사”. KRX Review 2005년 4월호
- 최명근. 2002. “미국의 유산세 폐지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 최원석. 1997. "과생금융상품의 회계와 조세처리에 관한 연구" 「과생상품브리프」
- 최홍식·김성룡. 1996. 「과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 및 과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 한국공인회계사회(조세정책연구위원회). 1997. 「과생상품 등의 회계처리와 과세에 관한 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 한국은행. 1996. 「과생금융상품의 이론과 실제」 한국은행.
-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1996. 「과생금융상품거래 회계처리기준」 한국은행.
- 한국은행. 1998. 「과생금융상품을 이용한 환위험관리」 한국은행.
- 한국은행. 1999. 「과생금융상품 위험의 특성과 관리방안」 한국은행.
- 한국은행. 2000. 「신용과생상품시장의 최근 거래동향과 규제현황」 한국은행.
- 허성관·홍순복. 1997.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주식매매에 미치는 효과”. 세무학 연구 제9호.
- 홍범교, 2006, “미국의 과생상품 과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2006년 5월호.
- 홍기용. 1996. "선물거래의 과세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7호)
- 홍범교. 1998. "과생금융상품과세" 「재정포럼」
- 홍종철. 2000. "과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방안" 「국세법무월보」 (제14호)
- 홍철근. 2000. "과생금융상품거래의 실태 및 과세문제검토" 「월간조세」 (6-8월호).

- Anson, M. 1999. *Accounting and Tax Rules for Derivatives*. Frank Fabozzi Associates.
- Conlon, S. and V. Aquilino, 1999, *Principles of Financial Derivatives: US and International Taxation*,
Warren, Gorham & London: Boston.
- Fabozzi, ed., 1998. *The Use of Derivatives in Tax Planning*. Frank Fabozzi Associates.
- FASB, 1998.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133*. FASB.
- FASB, 2000.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138 - an amendment of FASB No.133*. FASB.
- IASC, 1998.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IASC.
- IASC, 2000. *Exposure Draft E66 -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IASC.
- Jeffrey Owens. 2005.3. *Tax Reform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ECD.
- Marvin A. Chirelstein. 2005. *Federal Income Taxation(10th ed)*. Foundation Press.
- OECD. 1997. *The Taxation of Global Trading of Financial Instruments: A Discussion Draft*.
- OECD. 1994. *Taxation of New Financial Instruments*.
-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 The U. S. Code, Title 26.
- 菅野淺雄. 1999. 「금융과 디리브티브의 세무」 재경상보사.
- 企業會計審議會. 1999. 「금융상품에 관한 회계기준의 설정에 관한 의견서」
- 伊藤邦夫. 1999. "금융상품에 관한 법인세의 취급에 관하여(상)" 「국세속보」 (제5118호)
- 中央監査法人. 1999. 「신 금융상품 회계기준」 중앙감사법인.
- 中央監査法人, 1996. 「디리브티브 거래 세무·회계」 중앙감사법인.

Taxation Considerations of Derivative Instruments

Cheol Seung Kang*

Abstract

I suggest taxing qualifying derivative contracts by classifying into four categories such as forward, future, option and swap contracts. The gain or loss from trading derivative instruments should be included in taxable income in the year that covers maturity date, offsetting sales date or payment date. However, the gain or loss from measuring derivatives at year-end is taxable for exchange-traded contracts. Otherwise, it is taxable only when one of the parties to the contracts is a financial institution that uses reliable valuation models for derivative instruments. To the extent that hedge accounting is accepted, fair value measurement of hedged items should also be allowed. And the gain or loss on a derivative contract must be recognized as taxable income in the same period during which the change in value of the item being hedged affects taxable income. To enhance effectiveness of the taxation of derivative contracts, we suggest taxing certain option contracts under which one party transfers gain to the other through exercising or not exercising his/her right by applying the recalculation rule for unfair practices or the constructive rule. Finally, to minimize the likelihood that the gain on appreciated financial position together with derivative contracts is realized without paying or deferring taxes, I suggest treating the appreciated financial position as constructive sales—as if the derivative instruments of concern are sold at fair value.

Key Words: derivatives, forward, future, option and swap contracts.

* Chungang University, e-mail: cskang@cau.ac.kr, cp: 011-9087-8004.
